##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275 발의연월일: 2021. 11. 12.

발 의 자:윤관석・유정주・김정호

양경숙 · 정일영 · 이정문

김교흥 • 신영대 • 김한정

정성호 의원(10인)

### 제안이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 법규 준수 문화를 확산시키고 공정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평가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률상의 근거가 미비하고 실질적인 유인 수단도 부족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활성화에 한계가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함과 동시에,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 등에 따라 시정조치, 과징금 등의 감경과 같은 유인을 부여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사업자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운영상황 평가(안 제120조의2)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 과 등에 따라 시정조치, 과징금 감경 등의 유인을 부여하거나 지원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

나.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기관 지정(안 제120조의3)

공정거래 관련 분야에 대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공 정거래 자율준수평가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정 취소 및 정지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

#### 법률 제 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779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0조의2 및 제12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20조의2(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의 확산)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 촉진의 일환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을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하여 내부준법제도(이하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그 운영상황에 대하여 평가(이하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③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평가 결과 등에 근거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감경 등의 유인을 부여하거나 포상 또는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신청한 사업자에 대하

-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외에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0조의3(자율준수평가기관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관련 분야에 대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한다)으로 지정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에 관한 업무(이하 "평가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그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 기간 중 평가업무를 행한 경우
  -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20조의2제6항에 따른 공정거래 자율준 수평가의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 4.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업무를 거부한 경우
  - 5. 파산 또는 폐업한 경우
  - 6. 그 밖에 휴업 또는 부도 등으로 인하여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7799호 독점규제 및	법률 제1779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전부개정법률	공정거래에 관한 전부개정법률
<u>&lt;신 설&gt;</u>	제120조의2(공정거래 자율준수 문
	화의 확산) ① 공정거래위원회
	는 경쟁촉진의 일환으로 공정거
	래 자율준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런하고 추진할
	<u>수 있다.</u>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위원회 소관 법령을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하여 내부준법제도
	(이하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그 운영상황에 대하여
	평가(이하 "공정거래 자율준수
	평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받
	으려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
	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
	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통령

현 행	개 정 안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평
	가 결과 등에 근거하여 시정조
	치 또는 과징금 감경 등의 유인
	을 부여하거나 포상 또는 지원
	<u>등을 할 수 있다.</u>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신청한 사업자
	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외에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 &lt;신 설&gt;</u>	제120조의3(자율준수평가기관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관련 분야에 대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기
	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
	으로 지정하여 공정거래 자율준
	수평가에 관한 업무(이하 "평가
	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게 할
	<u>수 있다.</u>

현 행	개 정 안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평가기관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지
	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
	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
	5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
	<u>정을 받은 경우</u>
	2.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 기간 중 평가업무를 행한
	<u>경우</u>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
	20조의2제6항에 따른 공정거
	래 자율준수평가의 기준 및 절
	차를 위반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업무를
	거부한 경우
	5. 파산 또는 폐업한 경우
	6. 그 밖에 휴업 또는 부도 등으
	로 인하여 평가업무를 수행하
	기 어려운 경우